

I. 問題의 提起

- (정의) 반덤핑제도란 수출국의 덤핑 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 덤핑 행위란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일컫음
- (세계적 추세) 1992년 이후 감소되던 반덤핑조치가 199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 반덤핑조치를 주로 활용하던 Big Four(미국, EU, 캐나다, 호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까지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음
-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금융 위기 국가들의 저가 덤핑 수출의 단행,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의 대두, 「WTO 반덤핑협정」의 채택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활용 증가에 기인함
- 1995년 「WTO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각국이 제량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 있음. 이로 인해 반덤핑조치는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문제의 제기)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크고,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임. 세계적인 반덤핑조치의 확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반덤핑이란?

- 정의 : 반덤핑제도(Anti-Dumping Duty System)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행위라는 사실과 함께 이로 말미암아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입증해야함
- 덤핑 행위 :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생함
- 예컨대 21인치 컬러 TV의 한국 시장가격이 400달러인데, 미국 시장에서 250달러로 판매한다면 덤핑 판매한 것이 됨

- 피해 여부 : 1995년 발효된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체가 있을 경우를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 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국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특히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미국, EU 등은 재량으로 반덤핑 관련 법규를 입법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때문에 반덤핑조치는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반덤핑조치의 세계적 확산 추세

- 1995년경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치는 축소되었으나 1996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
- WTO에 보고된 세계의 반덤핑유효조치 건수는 1996년 6월말 854건이었으나, 1998년 6월말 현재 총 941건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조사중인 건수가 1996년 6월말 149건에서 1998년 6월말 235건으로 2년 사이에 57.7% 증가한 것은 최근에 제소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반덤핑 제소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의 반덤핑유효발동건수는 1998년 6월말 현재 322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경기 호조와 함께 92년 피크를 이뤘으나 최근 무역적자의 심화와 함께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각년도의 반덤핑제소 건수는 92년 89건, 93년 36건, 94년 59건, 95년 18건, 96년 13건, 97년 23건, 98년 1/4분기 21건임
- 이전에는 주로 Big four(미국, EU, 캐나다, 호주)가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전체 반덤핑조치 건수 중 Big Four는 1981~5년 99.0%, 1986~90년 89.0%를 차

<표 1> 세계의 반덤핑규제 동향

	시 기	조사중	잠정 조치	최종 관세 부과	가격 인상 약속	반덤핑 유효조치 (각시기말 현재)
미국	1994.7-1995.6	30	44	48	3	305
	1995.7-1996.6	16	13	17	0	294
	1996.7-1997.6	20	22			
	1997.7-1998.6	28	15	12	5	322
EU	1994.7-1995.6	37	15	21	1	178
	1995.7-1996.6	16	23	25	6	76
	1996.7-1997.6	26	26	10	5	157
	1997.7-1998.6	44	28	38	7	162
호주	1994.7-1995.6	6	5	2	1	86
	1995.7-1996.6	8	2	1	0	86
	1996.7-1997.6	22	6	1	1	56
	1997.7-1998.6	35	23	3	4	49
캐나다	1994.7-1995.6	9	2	13	1	91
	1995.7-1996.6	6	12	6	0	96
	1996.7-1997.6	8	8	3	0	95
	1997.7-1998.6	10	10	5	0	75
총계	1994.7-1995.6	160	110	129	8	869
	1995.7-1996.6	149	70	116	9	854
	1996.7-1997.6	200	143	85	14	938
	1997.7-1998.6	235	140	130	21	941

자료 : WTO, 각 연도 보고서

지하였음

- 1986년 UR 협상이 시작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와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반덤핑 제도를 도입한 데 기인하여 1990~95년에 Big Four의 비중은 79%로 줄어들었음.

- 90년대 들어 Big four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이들 국가들이 이미 상당한 품목에

-
- 반덤핑조치를 취하였고, 90년대 들어 선진국의 경기가 호전되었기 때문임
 - 98년 상반기에는 40건의 반덤핑 조치가 개시되었는 바, 그 중 Big Four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함
 - 개도국들의 미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90년말 17건에서 97년말 58건으로 급증하였음

- 한편 반덤핑과 관련한 분쟁도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최근의 추세임

- 1948년부터 1994년말까지 GATT에 제소된 분쟁 건수는 매년 평균 6건인데 반해 1995년에 출범한 WTO에 제소된 분쟁 건수는 98년 2월 현재 총 118건으로 연평균 40건임
- GATT에서 선진국간 분쟁은 전체의 75%였으며, 선·개도국간 분쟁비중은 25%에 불과할 정도였음
- WTO 체제에서는 선·개도국간 분쟁이 52%, 선진국간 39%, 개도국간 분쟁이 9%로 개도국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과거 선·개도국간 분쟁시 양자간 해결과정에서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 피해를 보던 개도국이 WTO라는 다자간 협상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임

○ 배경

- 금융위기국가들의 저가 수출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 97년 이후 금융 위기에 처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등 국가들은 수출 증대를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환율 인상을 활용하여 저가 수출로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진국 시장에서의 이들 국가들의 수출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피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미국은 1998년 무역적자가 1,670억 달러였으며, 1999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덤핑 수출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를 방지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경기 침체에 따른 각국 업계의 보호무역 정책 요구 증대

- 금융 위기국가들의 저가 수출과 더불어 98년 세계 경제의 둔화와 99년 둔화 전망 등이 각국 업계로 하여금 보호무역적 정책에 대한 요구를 크게 하고 있음
- 특히 기업들은 반덤핑 제소만으로도 경쟁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경쟁 전략의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음
- 미국 철강업계의 경우 제소 후 승소율이 50%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미국 불공정무역 관련 제소 건수 중 4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제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폐소하더라도 제소를 통해 시장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의해 얻는 이익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임
- 예비판정에서 대부분 긍정 판정이 내려져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290일 동안은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산업피해 예비 판정에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피해 부정판정을 받은 사례는 전체 반덤핑조치의 12%에 불과하며, 최종판정까지 포함하더라도 17%에 불과

- WTO 반덤핑협정의 채택

- WTO 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제도는 합법적인 국내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반덤핑, 반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정도인데, 전통적으로 반덤핑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음
- WTO가 다자간 협상체제라는 점은 쌍무협상에 의해 피해를 보아온 개도국들이 반덤핑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임

○ 문제의 제기

- 한국은 전통적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고, 한국의 수출 상품은 반덤핑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음
-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
- 미국의 총 수입중 반덤핑조치 품목의 수입 비중은 한국이 7.45%로 일본 2.31%, 중국 1.83%, 홍콩 2.51%, 대만 3.61%, 태국 0.28%, 인도 2.51%로 우리의 경쟁상

-
- 대국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미국과 EU 시장에서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도 컬러TV, 철강, 스테레스 제품, 반도체, 전자레인지 등 수출주종품목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수출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II. 韓國에 對한 反덤핑措置

- (추세) 1999년 2월 현재 19개국으로부터 69개 품목이 반덤핑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92년 이후 감소하다 97년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특징)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이 가장 많이 규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심각성) 최근 반덤핑규제가 심각한 것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 반덤핑조치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임
- (일몰 재심)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일몰 재심이 올해말까지 미국의 경우 13건이 진행될 예정임

○ 반덤핑 피제조 현황

-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최근 다시 늘고 있음
- 99년 2월 현재 한국은 19개국으로부터 69개 수출 상품이 반덤핑 조치를 적용 받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음.
- 반덤핑규제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은 49개이며, 조사중인 품목은 20개임
- 한국에 대한 신규 제소건수는 1992년 이래 축소 경향을 보이다가 1997년부터

<표 2> 년도별 對韓 신규 반덤핑 제소 건수>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건수		24	17	9	14	10	18	21
규 제 국 가	미국	6	1	2	1	1	2	4
	캐나다	1	2	0	1	0	0	1
	EU	3	2	0	3	1	3	3
	호주· 뉴질 랜드	7	5	2	1	3	2	0
	기타	7	7	5	8	5	11	13

자료 : 한국무역위원회(KTC)

다시 늘어 1998년에는 스테인레스 강선 등 21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제소가 이루어졌음

-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최대의 규제 국가는 미국임. 99년 2월 현재 반덤핑 규제가 진행중인 품목이 17개, 조사중인 품목이 4개, 조사예정품목이 열연후판, 새도 마스크 등 2개 등 전체 23개 품목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걸려있음
- 한국의 전체 수출 중 2.3%(약 31억 달러)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업종별 반덤핑규제 현황

- 반덤핑규제업종중 가장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철강임. 전체 69개 품목 중 24개에 해당하여 34.8%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철강업종은 7건이 조사중으로 최근 집중적인 감시 품목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컬러TV 브라운관, D램, 전화교환기시스템 등 전기전자와 폴리에스터 필름,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의 비중(각각 20.3%, 10.1%)이 높은 편임

<표 3> 업종별 반덤핑 피규제 현황(99.1 현재)

업종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류	기타	합계
총건수	24 (7)	14 (1)	7 (1)	7 (3)	17 (8)	69 (20)

()는 현재 조사중인 건수

자료 : 재정경제부

- 한국에 대한 반덤핑규제의 증가 원인

-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무역 적자가 1997년 1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1,68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특히 98년 들어서는 대미 무역수지가 97년 84억 달러 적자에서 23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
- 금융 위기 발생으로 인한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예컨대 대미 철강 수출은 98년에 전년 대비 112%가 증가하여 미국 업체가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 활용 증가는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 위표에서 보듯이 Big Four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반덤핑규제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부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98년에 남아공 5건, 인도 2건의 반덤핑규제가 발생하였음

- 반덤핑 피해소의 형태

- 선진국의 경우 시장에서 성숙단계 또는 쇠퇴기에 있는 수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의 가능성이 큼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철강,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자국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내 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산업 보호적 차원에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반덤핑규제의 심각성

-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이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① 철강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 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하였음. 철강은 그 주된 타겟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업계는 2월 한국을 비롯한 8개국 제품(열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해 제소할 것으로 예상됨
- EU도 반덤핑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더욱이 인도네시아도 석도강판에 덤핑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개도국의 반덤핑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② 반도체

- 작년 9월 미상무성은 4차 연례 제심에서 현대와 LG의 반도체에 대해 각각 3.95%, 9.04%의 덤핑 판정을 내렸음
- 한국의 요청으로 WTO에서 패널이 열렸으나,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 관련 규정이 WTO 반덤핑규정에 어긋난다는 결정은 얻었으나, 직접적으로 반덤핑조치 철회에 대한 권고가 나오지 않았음

- 따라서 여전히 5월에 있을 5차 반덤핑 연례 제심의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상태임
- EU에서도 작년 EU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기각하였으나 유럽전자부품협회(EECA)에서는 제소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태여서 반덤핑 제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EU 업계에서는 한국산 반도체를 가격 하락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음

③ 조선

- 주로 한국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EU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 지난 1월 유럽 주요 12개 조선업자들은 한국이 약탈적 선가를 통해 유럽 조선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함
- 한국의 조선업계가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는 환율 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EU 업계의 불만임
- 이탈리아는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 WTO에 반덤핑 제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일몰제심(Sunset Review) 등 반덤핑 대상 품목이 조절될 전망

- UR 협정에 의해 도입된 일몰협정(sunset clause)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가 도입된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기존 조치를 검토하여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행위 및 산업피해 지속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조치를 폐지토록 한 것임
- 현재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중인 17개 품목 가운데 1999년 중에 13개 품목이 일몰제심에 들어갈 예정임(<부표 2> 참조)
- 이들 대상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9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규제중인 품목은 15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산업협력사절단의 파견(EU, 99.4), 상무장관회담(캐나다, 99.7) 등을 통해 규제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III. 反덤핑措置의 影響

- (제소 자체가 위협으로 작용) 반덤핑건으로 제소만 되어도 수입업자는 수입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큼
- (산업기반의 약화) 수출 비율이 높은 한국 산업으로서는 반덤핑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 80년대 앨범, 합섬스웨터 등은 그 좋은 예임
- (수출 및 고용의 감소) 반덤핑 규제에 의한 수출 감소 효과는 약 50%로 추산되고 있음. 니트로셀룰로스화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음.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고용의 감소가 필연적임
- (기타 비용) 제소될 경우 자료의 준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각종 부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약탈적인 가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의 훼손을 가져옴

- 제소 자체가 위협으로 작용함
 - 반덤핑건으로 제소만 되어도 수입업자들은 동요하여 다른 수출업자를 찾는 경우가 발생함
 - WTO 규정상 반덤핑절차는 제소후 18개월 이내에 확정 관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효과는 잠정관세 부과시점까지 소급적용(EU는 잠정관세 부과부터 90일 전까지 가능)되어 일단 제소되면 수입상은 불안정 상태에 빠져 여타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큼
- 산업 기반의 약화 초래
 - 사진 앨범의 경우 미국이 1985년 1월 반덤핑 제소를 하고 동년 10월 최종판정에서 평균 64.81%의 덤핑 관세율이 부과되자 수출은 1984년 36백만 달러에서 86년에는 3백만 달러로 급감하게 됨. 1997년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관세를 철회한 결과 1998년에는 6백만달러로 수출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미 수출산업으로서의 앨범의 생명력은 다한 상태임
 - 합섬스웨터의 경우 미국이 1989년 9월 반덤핑제소를 하여 90년 8월 평균 1.3%의 덤핑마진을 최종 판정이 내림. 높지 않은 덤핑마진을 판정에도 불구하고 합섬스웨터의 수출은 1989년 542백만 달러에서 91년 159백만 달러로 급감하였고, 94년 6월 산업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수출이 97백만 달러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

- 수출 및 고용의 감소

- 반덤핑규제에 의한 수출 감소 효과는 약 50%로 추산되고 있음
- 현재 반덤핑 규제에 놓여 있는 수출 규모는 약 30억 달러이므로 반덤핑 규제가 없을 경우에 약 15억 달러의 수출이 증대할 것임
- 반덤핑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직수출을 포기하고 대신 현지투자 진출을 피하는 등의 대응에 따라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함
- 컬러TV의 경우 미국은 1983년 반덤핑제조를 행하였고, 15-16%라는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1983년 277백만 달러에 이르던 수출은 1985년 178백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이후 1989-91년 멕시코 현지공장의 설립으로 대미 직접수출은 1991년 4.6백만 달러로 떨어지게 되었음
- 니트로셀룰로스의 경우에는 피소 후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음
- 수출이 감소할 경우 수출품 생산을 위한 고용 감소가 불가피함

<표> 반덤핑 피소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품목	규제국	피소일	피소년도 수출	피소이년도 수출	비고
스탠다드 강관	미국	91.7	(91)129	(92)106	
와이어로프	미국	92.4	(92)73	(93)68	
D램	미국	92.4	(92)338	(93)230	
전자렌지	EU	93.12	(94)177	(95)94	
팩시밀리	EU	97.2	(97)108	(98)61	

- 기타 비용

-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각종의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소극적으로 덤핑 관정에 대응할 경우 높은 덤핑 마진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 있음
- 또한 외국에 ‘약탈적인 가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 기업 홍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음

IV. 대응

○ 정부의 대응

- (반덤핑제도의 폐지 유도) 일국의 반덤핑조치는 타국의 보복적 반덤핑조치를 불러일으키는 경향 있으므로 반덤핑규제를 경쟁정책으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WTO 특별 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덤핑절차의 명료화와 우회덤핑 방지 등 새로운 국제 규범이 창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업의 대응

-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근본적으로는 가격보다는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해야 함
- (사전 예방이 최선) 반덤핑절차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심각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
 - 신중한 가격 설정, 국내기업간 과당 경쟁의 자제, 현지 기업들의 불만을 사전 해소, 소나기식 수출의 자제 등이 요청됨
 - 반덤핑조치의 부당성을 현지 수입업체 및 소비자들과 협력하여 홍보할 필요 있음
- (철저한 소명 자료의 준비) 반덤핑절차가 준사법적 절차에 진행되므로 로보보다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법규가 세부 부분까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문가를 통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 자료 제시가 중요함
- (일몰 제심에 적극 대응) 일몰 제심을 통해 반덤핑조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대응) 개발도상국의 반덤핑규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들의 반덤핑제도가 주로 해당국가의 성장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산업내 무역, 기술 협력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1. 정부의 대응

- 세계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반덤핑규제가 수입 규제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로 말미암

-
- 아상대국들 역시 보복적 차원의 반덤핑 규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반덤핑규제를 새로운 라운드에 논의에 부치자는 논의가 늘고 있음.
 - 반덤핑규제의 기능을 경쟁정책으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미국, EU 등 각국 반덤핑 관련 조사 및 규제 방법에 대해 WTO를 활용하여 그 개선을 요구

- 반덤핑조치 관련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

- WTO 내의 특별 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덤핑절차의 명료화와 우회덤핑 방지(anti-circumvention) 등 새로운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우회덤핑방지는 WTO 반덤핑협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WTO 회원국들이 재량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통일된 국제 규범이 출현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기업의 대응

-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 근본적으로는 가격 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해당국에 동질적 상품의 경우일수록 반덤핑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품을 차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밖에 신상품 개발, 서비스, 내구성 강화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반덤핑조치의 사전적 예방이 최선

- 반덤핑 절차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 및 산업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및 가격 책정을 신중히 하고, 현지기업의 불만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 기업들간의 가격 과당 경쟁이 덤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
- 관련 업종의 타국 기업의 덤핑 관련 정보 수집 및 대응책 마련
- 소나기식 수출은 반덤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자제

- 현지 수입 업계와의 협력 강화

-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되고, 수입 업체에 타격을 주므로 현지 수입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반덤핑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함
- 또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현지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킴
- 현지 시장에서 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킴
- 예컨대 미 철강 수입업계 단체인 AIIS(The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는 USTR(미 무역대표부)에 반덤핑법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음

- 반덤핑 제소시 소명 자료의 철저한 준비

- 반덤핑절차는 준사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로비 등의 방식이 통하기 어려움(미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캐나다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는 독립적 준사법기구임)
- 이해관계자들(수출업자, 수입업자,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자, 관련상품 도소매업자 등)의 주장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소명 자료의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제소자의 자료를 근거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큼
- 특히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시됨
- 조사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함

- 일몰 심사에 적극 대응

- UR협정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실시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국가들이 계속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WTO 발효 이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모든 품목들에 대해 5년 이내(2000년 이전)에 계속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반덤핑관세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재심토록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은 이에 따라 98년 10월부터 1999년 말까지 일몰 재심을 진행할 예정임

- 일몰 제심을 통해 반덤핑조치가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

- 개발도상국의 반덤핑규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들의 반덤핑 관련 법규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의 반덤핑 제소가 주로 해당국가의 성장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산업내 무역, 기술 협력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IMF 연구팀 : 김 옥 복 ybkim@hri.co.kr ☎724-4032)

국 명	품 목	조사 개시일	비 고
미국	스텐레스 강선	98. 3.27	
	스텐레스 열연후판	98. 3.31	
	합성고무(SBR)	98. 4. 1	
	스텐레스 냉연강판	98. 6.10	
캐나다	스텐레스 스틸 봉강	98.12. 3	
EU	스텐레스 강선	98. 6.25	
	철강재 와이어로프	98. 5.20	종결
	폴리에스터필라멘트사	98. 7. 7	
남아공	아크릴 담요	98. 4. 8	
	카본블랙	98. 8.24	
	스텐레스 싱크대	98. 9. 4	
	광케이블	98.10. 1	
	스테인레스 철강관	98. 7.31	종결
인도	공업용 제봉바늘	98. 1.16	
	합성고무(SBR)	98. 1.19	
인도네시아	석도강판	98. 3.24	
터키	폴리에스터필라멘트사	98.11.17	
아르헨티나	계맛살	98. 1. 7	종결
콜롬비아	타이어	98. 7.22	
파나마	철근류	98.12. 6	제소일
이집트	타이어	98. 9.15	

<부표 1> 1998년도 한국의 반덤핑 피제조 품목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협력과

<부표 2> 5년 이상 장기 규제중인 한국의 반덤핑 피제조 품목

국 명	품 목	조사 개시일	비 고
미국	가단주철관이음쇠	86. 3.31	일몰재심(99.1)
	황동관	86.11.10	“ (99.2)
	금속제취사도구	86.11.26	“ (99.2)
	컬러TV브라운관	86.11.18	“ (99.4)
	전화교환기시스템	89.12.27	“ (99.6)
	니트로셀룰로스	90. 5.22	“ (99.6)
	폴리에스터필름	91. 4.22	“ (99.7)
	스탠다드강관	92. 9.17	“ (99.5)
	스텐레스용접강관	92.11.12	“ (99.6)
	스텐레스강관이음쇠	92.12.29	“ (99.7)
	와이어로프	93. 2.23	“ (99.1)
	메가D램	93. 5.10	“ (99.9)
	철강관재류(냉연, 아연도강관)	93. 7. 9	“ (99.7)
EU	컬러TV(16인치 이하)	90. 4.27	무역산업협력사 절단 파견(99.4, 불·독)
	글루탄산나트륨	90. 6.30	
	폴리에스터 短사	93. 3.18	
	대형알미늄축전지	94. 6.18	
	플로피디스크	94. 9.10	
캐나다	탄소강관	83. 6.28	양국상무장관회 담(99.7)
	앨범시트	85. 4.26	
	유정용강관	86. 4.17	
	중후관	94. 5.17	
	아연도강관	94. 7.29	
호주	발포성폴리스틸렌	92.11. 2	산업자원협력위(9 9.5)
	유리장섬유	94. 5.25	
뉴질랜드	자동차연산축전지	91.12. 9	APEC 정상회담 (99.9)
멕시코	폴리에스터 短사	93. 8.19	일몰재심 (98.12.21)
터키	자동차연산축전지	92. 5.20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협력과

○ WTO 반덤핑협정의 출현과 그 의미

- 반덤핑 제도는 1900년대에 시작되었고, 1994년 WTO 반덤핑협정이 채택된 이후 반덤핑제도를 채용한 국가가 늘어남
 - 1900년대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에 의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함. 1904년 제정된 캐나다의 반덤핑조치법(antidumping law)이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임. 뉴질랜드는 1905년, 호주는 1906년, 미국은 1916년에 반덤핑규정을 도입하였음
 - 개별 국가에 의해 일방적인 반덤핑 규정이 행해짐에 따라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47년 GATT에서 반덤핑 관련 규정(제 VI조)을 도입하게 됨
 - 그러나 1947년의 규정이 너무 간결하여 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1967년에 “GATT 제 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9년 GATT의 7차 동경라운드에서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국제규범을 채택하였음
 - 1994년 4월 UR에서 “WTO 반덤핑협정”이 채택됨. 이는 그간의 규정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 가능성이 컸었고, 기업활동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음.
 - 반덤핑제도는 UR 이전까지는 주로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였으나,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1985년까지 반덤핑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15개국이었으나, 97년 말에는 73개국으로 늘어났으며, WTO 비회원국인 중국도 1997년 3월 도입한 바 있음
 - 한국의 경우 1986년에 관세법 10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
- 1995년에 발효된 WTO 반덤핑협정은 현재 134개국 회원국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 각국의 반덤핑 관련 법규가 WTO 반덤핑협정과 충돌할 경우에는 WTO 반덤핑협정이 우선하게 됨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각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규정, 행정절차를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WTO 협정 규정이 지니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각국의 법규는 자의적 운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 훨씬 상세하고 독자적인 반덤핑규정을 가지고 있어 양 규범 사이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 규정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미국, EU 등은 재량으로 입법하고 있는 실정임

- 반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WTO 협정)

- 1) 조사(investigation) : 해당 산업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대표하는 생산자 및 노조가 신청하거나 관계 당국의 조사개시 결정에 의해 개시됨. 주로 주장되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함
 - 덤핑차액이 미소하거나(수출가격의 2% 미만), 물량이 적을 때(특정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동종 물품 총수입의 3% 미만)는 조사를 중단해야 함
 - 덤핑이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함
- 2) 반덤핑조치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아래 세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①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 잠정적으로 추계된 반덤핑관세액에 해당하는 잠정관세(provisional duty)를 부과하거나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조치
 - 이를 위해서는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어야 함
 -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용할 수 없고, 적용은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s) : 당국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말함
 - 당국은 가격인상약속을 받는 즉시 반덤핑절차를 중단하거나 종결해야 함
 - ③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하여 덤핑차액 또는 보다 적은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한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범위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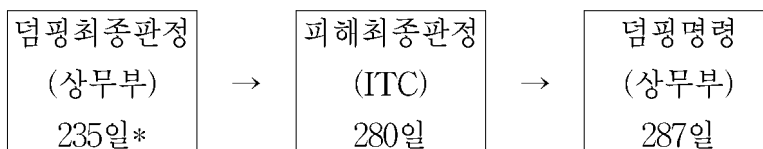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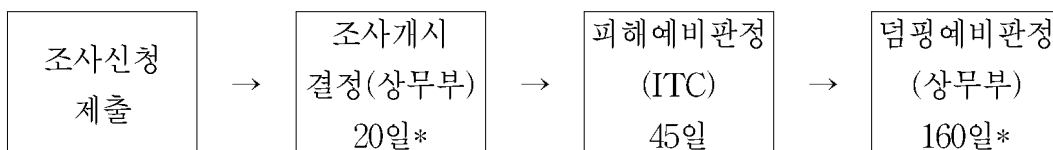
만 효력이 있음

- 원칙적으로 그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 소멸됨

○ 분쟁의 해결

-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관(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마련함
 - 각국의 법규에 따른 반덤핑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됨을 규명하는 분쟁이 주된 것으로 이는 WTO 협정이 가지는 불명확성이라는 한계에 기인함

<부록3> 미국의 반덤핑 규제 절차



기일표시는 조사신청 제출일부터 계산된 것임.

이중 * 표시는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